2023학년도

교육과정 설명회 **학부모 연수자료**



냉 정 초 등 학 교

2023학년도 학부모 연수 목록

1. 불법찬조금 및 청탁금지법 연수	·· 1
2. 2023학년도 학생 출결관리 안내	4
3. 교사의 교육권 함께 존중하기	5
4.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금지	·· 7
5. 학생 개인 봉사활동 운영 연수	9
6.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11
7. 냉정초 생활지도 매뉴얼 안내	12
8. 학부모님을 위한 체험형 인권교육 앱 안내	15
9. 소중한 내 아이를 살펴봐주세요.(생명존중 교육)	16
10. 아동학대 및 신고 학부모 연수	17
11. 학교폭력예방 학부모 연수	18
12. 가정폭력예방 학부모 연수	20
13. 자살예방 학부모 연수	21
14. 통합교육 및 장애 이해 학부모 연수	23
15. 학부모를 위한 안전교육 연수	25
16. 학부모를 위한 정보통신윤리교육	27
17. 인터넷 중독 예방	29
18. 성폭력 예방	30
19. 감염병 예방	32
20.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34
21. 내 자녀 바로 알기(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35
22. 학생성장중심평가의 이해	36
23. 학교도서관 이용 안내	38

불법찬조금 근절 및 청탁금지법 안내

불법찬조금 정의

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방과후교육활동·청소년단체, 교육활동후원단체) 등이 교육활동 지원을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하여 학교 발전기금 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

▷ 불법찬조금은 개별 촌지보다 더욱 질이 나쁜 구조화된 집단 촌지임

<주 요 유 형>

- 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 ▶ 인건비 보조, 출전비, 훈련비 및 간식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하여 집행
 - ▶ 운동부 코치 등에게 우승사례비, 명절휴가비, 출전 및 진학 관련 접대성 경비 등을 지급하기 위해 모 금하여 집행
-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에서
 - ▶ 학부모를 대상으로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학생 간식비**, **학교행사 지원(스승의 날, 소풍**, 운 동회, 현장학습 등), 교직원 선물비, 심화학습반 운영비 등을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 모금하여 집행
- 학교장 등이
 - ▶ 사전에 기부 희망액을 조사하거나 신청 받는 행위 또는 기부액의 최저액, 최고액을 정하여 조 성하는 행위
- 학부모단체에서
 - ▶ 자신들의 식사비 명목으로 사전에 일정 금액을 모금
- 그 밖에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행위

□ 불법찬조금 발생원인

- 학교발전기금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 학교발전기금 회계 관련 업무처리에 대한 부담(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예·결산 업무 등)으로 일부학교 에서는 예산 미편성
- 학부모의 그릇된 참여의식 관행 잔존
 - 학교행사 지원 등을 명목으로 학부모 회원에게 일정액을 할당해 오던 관행이 잔존하며, 일부 학부모 임원들이 일정액을 할당 모금하는 경우, 자녀의 불이익을 우려해 찬조금 모금에 동참
 - 자생단체에서 집단적으로 모금 집행하는 것은 부패행위가 아니라고 인식
- 학교관리자의 불법찬조금 근절의지 부족과 소극적 대처
 - 학부모들이 모금 집행한 불법찬조금은 학교의 책임이 아니라는 오해

-< 학교발전기금·불법찬조금 비교 >

원그비교기그	7 H	HU위구기
학교발전기금	구분	불법찬조금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성명의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조성되는 행위
-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기부·조성 ※ 홍보시 "자발적 참여로 조성하며, 자발적이 아니면 절대로 조성하면 안된다"는 사항을 반드시 명시 - 학교발전기금회계로 편입	조성방법	 자발적인 의사에 반한 모금 조성행위 ※ 일정액 할당, 납부서 일괄배부, 개별 면 담 또는 전화를 통한 강요 등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지 않는 행위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사용목적	- 법령에 의하지 않은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행위 ※ 교직원의 각종수당(인건비), 여비, 연수비, 회식비, 체육복구입비등 ※ 각종협의회비, 간담회비, 선물비, 화환 등

□ 불법찬조금 발생에 따른 영향

- 사안 발생 시 언론보도 등을 통해 교직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일반국민들의 교육행 정에 대한 불신과 공교육의 공정성 의심
- 금품·향응 수수에 따른 교직원과 학부모간 신뢰도 저하
- 불투명한 모금과정과 집행으로 인한 학부모 단체 구성원 간 분쟁 발생
- 위법성에 대한 의식 없이 관행적 금품·향웅 수수가 발생할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수수자, 제공자 모두 처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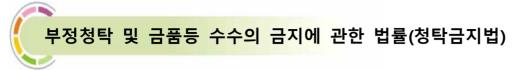
< 적발 주요사례 >

- ☞ ○○중 학부모회에서 학생 장기자랑대회 행사지원과 간식 제공 명목으로 70만원 상당 찬조금을 모금 하여 임의 집행
- ☞ △△중 야구부 학부모회에서 지도자 급여 보전 명목으로 금전을 임의 모금하여 900만원 상당을 감독 과 코치에 전달
- □□고 축구부 학부모회에서 운동부 운영경비 1억6천5백만원 상당을 별도 모금하여 간식비, 특식비, 기숙사 비품 및 식자재비 등으로 집행하고, 그 중 1천8백만원 상당을 우승성과금 명목으로 감독과 코치에 전달

__ 불법찬조금 신고 어떻게 할까요?

[시흥교육지원청 불법찬조금 신고 센터]

- 인터넷 : 홈페이지(www.goesh.kr)/상담 및 신고센터/불법찬조금 신고
- 전 화 : 시흥교육지원청 031)488-2403~2406



₩ 청탁금지법이란?(법 제1조))

□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법 제정 목적

▶ 적용 대상 기관 및 대상자(법 제2조)

- □ 대상기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사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 □ 공직자 등과 그 배우자,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간인 또는 기업, 일반 국민

₩ 부정청탁이란?

"부정청탁" 이란 직무관련자가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직접 또는 제3자(재직 중인 공무원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공무원에게 법령에 위법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을 하는 행위 및 그 청탁을 알선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부정청탁 행위

○ <u>위법성에 대한 의식 없이 **관행적 금품·향응 수수가 발생할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u> 관한 법률」(이하 :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수수자, 제공자 모두 처벌**

-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16.11.30.시행) >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 ※ 법령위반 시[제21조(징계), 제23조(과태료 부과)]
- 공직자 등(교직원) : 징계대상이며,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대상임
- 제공자 :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대상임

▶ 부정칭	성탁 처벌	기준은?	☞ 청탁금지법 관련자료 안내 및 신고
위반행위	위반행위		
 ● 공직자등에게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 	 ● 공직자등에게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경기도교육청(<u>www.goe.go.kr)>청탁금지법</u> 안내 및 신고
* 10712 0140 HTHEE # 1	일반국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u></u>
●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	공직자등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시흥교육지원청(<u>www.goesh.kr)>참여.민원</u> >
●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공익제보센터

2023학년도 학생 출결관리 안내

1. 출결관리

가. 질병 결석

3일 이상	결석계, 진단서(의사소견서)
2일 이내	결석계, 처방전(약봉투) 또는 담임교사 확인서

나.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실시 1일 전까지 제출			
보고서	실시 후 5일 이내 제출			
※ 연간 최대 20일 까지 가능 (가정학습 포함)				
※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에서만 사용 가능				
※ 문자 신청 가능하며, 문자 신청 시 보고서와 신청서 원본 함께 제출				

다. 경조사 출석 인정 일수

구 분	대 상	일수
결 혼	형제, 자매, 부, 모	1
입양	본인	20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사 망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비고	주말,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입양 이외의 경조사 일수는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 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한 왕복 소요

2. 코로나19 대응 출결관리

코로나19예방 및 감염 관련 출결은 관련 공문을 근거로 하여 관리함

3. 출결

- 가. 정규 수업 시간까지 학생이 등교하지 않았을 때 즉시 학부모 연락을 통해 사유를 파악한다.
- 나. 질병, 미인정, 기타 결석 등 결석 시 5일 이내 결석계를 제출한다.
- 다. 3일 이상 질병 결석의 경우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하고, 2일 이내 의 병결은 처방전(약봉투)이나 담임교사 확인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한다.
- 라. 기타결석은 사전에 내부기안으로 학교장의 승인을 득해야 하므로 담임교사와 사전 상의한다.

교권 존중, 학생의 학습권 보호입니다.

1. '교권'이란?



2. 교권 침해의 유형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의 유형

1. 수업권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 수업시간에 소란스럽게 돌아다니는 행위
- 수업시간에 떠들거나 수군대는 행위
- 교사의 목소리, 행태 등에 빈정거리는 행위
- 수업과 관련 없는 질문으로 수업의 흐름을 방 해하는 행위
- 비스듬히 앉아서 교사랑 눈싸움하는 행위, 코 를 골면서는 자는 행위
- 책, 노트 등을 준비하지 않고 빈 가방으로 등 교하는 행위

2. 교사에 대한 폭력, 성폭력이 우려되는 경우

- 정당한 지시에 대한 폭력 행사
- 여교사의 속치마 촬영
- 강제로 어깨동무 하는 경우
- 인터넷에 합성 음란물 사진 유포
- 학급 카톡에서 특정 교사를 놀리는 행위

3. 교사의 지시 무력화되는 경우

- 일진회 등 힘이 센 학생들이 사주하여 교사의 - 안전사고 피해 시 학부모의 부당한 협박이나 지시 거부, 인사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 는 행위

※ 교권침해로 인한 돌이킬 수 없는 후회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의 유형

1. 교사의 인격권 침해하는 경우

- 학부모가 교사에게 폭언하거나 폭행하는 경 우
- 사이버상에 교사를 비방 행위(카톡, 밴드)
- 사생활(이혼, 이성문제 등)을 다른 학부모에 게 유포하는 행위
- 수업 형태, 생활지도를 비하하는 내용을 유 卫
 - 전화, 이메일, SNS 등을 통한 폭언, 협박 등

2. 교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교무실, 교실에서 폭력, 재물을 파손하는 경 우
- 시험 출제 경향의 요구, 수행평가 점수를 알 려달라는 행위 등
- 생활기록부의 부당한 정정, 기록을 요구하는 경우
- 민원 제기
- 학교폭력 처리과정에서 교사에 대한 부당한 협박, 욕설

* 교권침해 시 복합적인 어려운 예상

학교선도위원회	
징계	

- 학교 내 봉사
- 사회 봉사
- 특별교육 이수
- 10일 이내 출석정지
- 퇴학

경찰 조사 및 처벌

- 폭행죄
- 명예훼손죄
- 모욕죄
- 민사손해배상 (학부모)
- 학부모의 불법 행위로 인한 형사 처벌
- 학부모에 대한 민사상 손해 배상 청구
- 소문으로 인한 불편한 학교 생활

※ 교권침해 그 이후

- 학습권 침해로 정상적 교육 활동에 저해 - 학교 문화 붕괴로 행복한 학교생활 교사는... - 학생에 대한 PTSD 증후군 발생 저해 - 담임 교체 등 2차 피해 발생

3. 학부모의 고충은 지혜롭게!

• 내 자녀만 미워한다고 느끼는 경우	- 내 자녀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주변 친
• 내 자녀에게만 불이익을 주는 경우	구들에 확인하는 등 객관적으로 이해
- 연속하여 뒷자리 배정, 발표에서 제	- 담당부장 및 교감(교장)과 상담
외하는 경우 등	- 교육청 담당 장학사에게 도움 요청
• 진학 및 진로에 대한 지도 부실, 수	- 관련 사항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 확보
- '전략 및 전도에 대한 시고 구글, 구 업 부질	- 관련규정 및 지침 등 확인
합 구결 • 학교생활기록부(봉사활동) 등재 부실	- 담당부장교사 및 교감(교장) 상담
학의 교생물기국구(중시설중) 중세 구절	- 교육청 담당 장학사에게 도움 요청
	- 체벌 증거 자료를 확보한 후
	- 체벌 동기 및 정황을 확인
• 내 자녀가 부당한 체벌을 당한 경우	- 교감(교장)과 상담한 후에 조치 요구
	- 학생인권옹호관 또는 지역교육청 담당 장학사에게
	도움 요청
	- 관련법률의 이해(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참여(관련자 조치, 분쟁조
• 내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 피해자	정)
로서 도움을 받고자 할 때	- 담당자(학교폭력책임교사) 및 교감(교장)과 상담
	- 교육청 생활교육 담당 상담사(교육청 담당 장학사)
	에게 도움 요청
	- 치료 및 보호조치 후 관련 증빙자료 확보 담당
• 내 자녀가 학교교육활동 중 안전사	- 학교안전공제회 지원 여부 확인(학교담당자)
고를 당했을 때	- 담당자(학교안전공제회) 및 교감(교장)과 상담
	- 교육청 법률지원팀 및 담당부서(안전공제회) 요청

※ 학교 공동체의 주인인 학생, 학부모, 선생님 모두는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행복한 학교 문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u>교권보호</u>, 내 자녀의 행복을 위하여 다 같이 노력해야 합니다.

공교육정상화법 및 선행교육 금지

1.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이란?

초·중·고등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등을 금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동안 미리 배워온 것을 전제로 한 수업과 시험출제 관행은 학생들에게 과도한 학습 부담을 주는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이제 공교육정상화법 시행을 계기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학습을 통해 건강한 신체 발달을 도모하는 공교육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선행학습이 필요 없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학교가 편성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학교수업 및 방과후 학교 실시



학교시험은 배운 내용에서 출제

학교시험(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및 각종 교내대회 등은 배운 내용 에서 출제



사교육 없이 준비할 수 있는 공정한 압학전형

대학,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 등의 입학전형은 입학 이전 교육 과정의 범위안에서 시행



학원 등 사교육기관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금지

선행학습 유발 광고 또는 선전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지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사교육기관의 동참 유도

1. 교육과정 편성 · 운영 · 평가

□ 선행교육

- 1. 수업이나 방과후학교에서, 편성된 학교 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행위 ('앞서는' 교육과정이란, 해당 학기, 학년, 또는 학년군에서 학습하도록 계획된 것에서 벗어난 내용)
- 2.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을 사실상 운영 하는 행위 (예 : 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학생을 일정 기간 출석시켜 고등학 교 과목 내용을 지도하는 경우)

□ 선행학습 유발행위

- 1. 학생이 배운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지필평가, 수행평가, 각종교내 대회 등에 출제하는 행위
- 2.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예 : 고등학교 입 학 예정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배치고사에 고등학교 내용을 출제하는 경우)

편성단계



운영단계



평가단계

• 국가 교육과정, 시·도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학년(군), 학교급 범위 내에서 편성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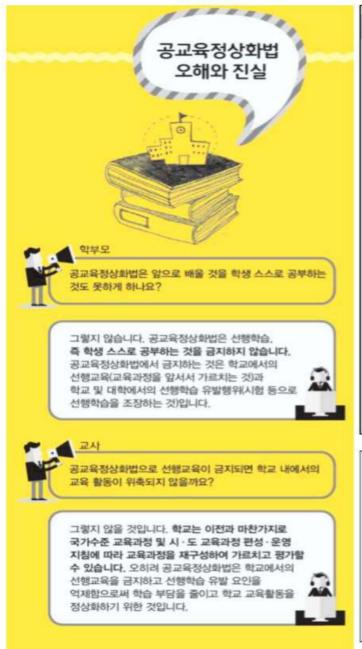
- -목표, 내용, 수준, 지도 순서, 시간, 방법의 조정
- 계획(편성)된 학교 교육과정 운영
- 교과별 지도 계획과 운영의 일관성 유지
- 교육과정 재구성으로 내용의 순서와 비중 등 조정 운영 가능
- 학생이 배운 학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에서 평가 - 지필명가, 수행평가 등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과 기능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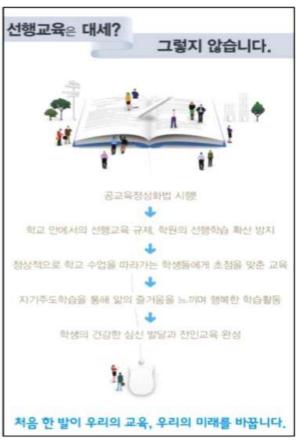
2. 입학전형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압학전형 범위 준수
- ② 학교의 설립 목적과 특성에 맞는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반영
- ③ 입학전형 반영 금지 사랑 준수



2. '궁교육정상화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





■ 선행교육 판단 기준

학교가 편성한 교육과정을 앞서서 교육 하는 것을 선행교육이라고 하고 일반적 으로 교수·학습 및 평가가 학기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학기를 기준으로 '선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 사에게 부여된 교육과정 재구성권 등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3. '공교육정상화법'및 선행교육 금지의 효과

미리 배워온 것을 전제로 한 수업과 시험을 금지하여 교육과정에 충실한 수업을 구현할수 있게 되며,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을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선생학습 유발 금지를 통하여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됩니다.

※ 공교육정상화법 이해도 제고를 위한 KICE(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안내 영상 안내

- 선행교육의 범위와 대상, 선행교육 점검 기준, 선행교육 예방의 필요성 등
- 자료 확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자료마당] [공교육정상화법 홍보 자료]
- KICE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홍보 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_1ohBYEqmaw)

학생 개인 봉사활동 운영

1. 학생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 사전 봉사활동 계획을 학교장이 추천(허가)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 가능하며 사후 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하면 담임교사가 확인 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함. 단, 실적 연계사이트를 이용하면 계획서나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 없이 봉사활동 실적이 인정됨.(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

2. 개인 봉사활동 시간 인정 기준

- ✔ 봉사활동은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제 봉사활동 시간에 한해 인정함
- 60분을 1시간으로 산정함 (단, 교육과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교내 봉사활동은 수업시간 기준 40분을 1시간으로 산정함)
- 수업이 있는 평일에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 수업시간이 5교시인 경우 봉사활동은 3시 간만 인정함
- 수업이 없는 방학 등 휴업일에 봉사활동 하는 경우 : 8시간까지 인정함
- 미인정 결석 중 실시한 봉사활동, 징계 및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따른 학교 내 봉사활동,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은 실적으로 인정 불가

3. 봉사활동 인정 가능한 기관

✔ 자원봉사활동의 기본 방향(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에 부합되는 기관

공공부문	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시설
미가ㅂㅁ	민간기관(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및 단체)
민간부문	시설(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복지, 보건.의료.요양, 문화, 체육 등의 시설)

✔ 학생 봉사활동 인정 불가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종교적 · 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 관이나 단체)

4. 개인 계획에 의한 붕사활동 절차

✔ 실적 연계사이트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및 학교장 허가 필수



✔ 실적 연계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제출할 필요 없음

	[학생]		[학생]		[학생]		[학교]		[학교]
***************************************	실적 연계사이트 에서 봉사활동 검색 후 신청	⇒	봉사활동 실행	•	봉사활동확인서 나이스로 전송	•	나이스에서 전 송된 실적자료 확인 후 승인	•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 확인필요

-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에 있는 기관이나 활동이라도 경기도교육청 '2023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벗어나는 경우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중요】 <u>봉사활동 실시 전 담임교사와 사전 상담을 실시하여 인정 가능 기관 및 활</u> 동인지 반드시 확인 필요!

5. 학생 주도 프로젝트형 봉사활동

✔ 학생의 진로나 흥미, 특기와 연계한 봉사활동 계획을 학생 스스로 수립하여 장기간 실 시하는 봉사활동

✔ 절차

- 계획 단계: 주제선정, 목표 및 계획 수립, 계획서 학교 제출, 학생 봉사활동추진위원회 심의
- 실행 단계: 실행과 기록(담임교사 지도 및 확인), 안전사고 유의
- 평가 및 활용 단계: 보고서 작성 및 학교 제출(학생 봉사활동추진위원회 심의 후 봉사활동 실적 인정)

6. 기타사항

- ✔ 2023 냉정초등학교 학생 봉사활동 운영계획 및 관련 서식(계획서, 보고서 등)은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할 예정임(3월 중)
- ✔ 예시나 기준이 없는 봉사활동의 인정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은 경기도교육청 '2023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근거하여 학생 봉사활동추진위원회에서 하고,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인정함
- ✔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에서 봉사활동을 나이스로 전송하면 학부모님께서 나이스학 부모서비스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담임교사의 확인 및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과정이 필요함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1.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이란?

- 학생의 필요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개인체험학습
- 현장견학· 답사, 체험활동(문화체험, 직업체험 등),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등
-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을 통해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학습

2.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확인하세요.

- 본교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20일 이내로 함. 다만, <u>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u> 또는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가정학습을 허가할 수 있음. (가정학습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일수에 포함하여 계산)
- 학원 수강(예술·체육계 포함), 해외 어학연수, 학교의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교외체험학습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미인정결석 처리됨.
- 신청서는 학생·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1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함.
-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u>반드시</u> 안전 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함.
-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u>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u>에 제출하다
- 교외외체험학습 실시 중 사안(사고) 발생시 보호자는 담당(담임)교사에게 연락을 하도록 함.
- 보고서를 제출 한 후에는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
-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교외체험학습 시간이 4시간 미만일 경우 반일 처리함 (단, 반일은 당일 수업에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함)

3.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양식

- 학교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상단의 전체공지 [2023 학교장허가 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냉정초 생활지도 매뉴얼 안내

- 1) 본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폭력과 체벌, 안전사고가 없는 학교,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냉정초등학교 생활·인권규정을 기초로 생활지도** 매뉴얼을 수립하여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 2) 생활지도 매뉴얼 준수동의서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문제 발생 시 학생 생활교육위원회(구 학생선도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특별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3) 반복적인 매뉴얼 규정 위반이 있을 경우 담임교사가 학부모님과의 개별 상담을 요청합니다.
- 4) 학부모과의 상담 후에도 변화가 없을 경우, 학교장이 [생활지도 매뉴얼에 따른 학부모 상담 안내장]을 발송하고 관리자 및 상담교사와의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 5) 필요시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하여 특별 조치할 수 있고,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이 심각하게 피해를 입을 경우 학생을 **분리 조치**할 수 있습니다.
- 6) 생활지도 매뉴얼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0	ᅡ	

- 기본품행(냉정초등학교 생활·인권규정 제2장 제1절 제5조~제11조)
- 가. 정상적인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 나. 타인의 학습권을 침해한 경우
- 다.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스러운 언행을 할 경우
- 라. 학생의 신분에 어울리지는 않는 복장(화장 포함)을 한 경우
- 마. 학교를 무단이탈한 경우
- 바. 수업에 고의로 늦거나 수업 중 교실을 이탈한 경우
- 사.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어 및 신체 표현, 나쁜 행동을 했을 경우
- 아. 복도에서 반복적으로 뛰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 자. 헛소문, 욕설, 따돌림, 강제 심부름, 유인, 감금, 협박, 모욕, 폭력, 성폭력 등의 학교 폭력을 행할 경우
- 차.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에 준하는 학생을 차별하거나 괴롭힌 경우
- 2 시설 이용 및 환경(냉정초등학교 생활·인권규정 제2장 제1절 제12조)

- 가. 학교의 시설물을 함부로 다룬 경우
- 나. 교구를 정리 정돈하지 않은 경우
- 다.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한 경우
- 라. 고의로 실내외를 더럽힌 경우
- 3 사이버생활 및 통신기기 관리 (냉정초등학교 생활·인권규정 제2장 제3절 제21조~제22조)
 - 가. 학생이 교내에서 휴대전화를 비교육적으로 사용한 경우: 타인의 음성 녹음이나 모습 녹화 또는 유포, 게임 및 동영상 시청 등
 - 나. 학생이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수업 등 교육 활동을 방해한 경우
 - 다. 학생이 사이버 공간에서 폭력, 비방, 성희롱 등을 행한 경우
- 4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냉정초등학교 생활·인권규정 제2장 제1절 제13조)
 - 가. 다른 학생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는 경우
 - 나.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에 허락 없이 손을 대는 경우
- 5 하교 후 생활(냉정초등학교 생활·인권규정 제2장 제1절 제17조)
 - 가. 불건전한 유해업소에 출입하는 경우
 - 나. 불건전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 및 청소년 유해 매체의 소지 및 사용하는 경우
 - 다.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 6 휴대금지 물품 소지(냉정초등학교 생활·인권규정 제2장 제1절 제18조)
 - 가. 음란물(미디어, 서적 등), 흡연 관련물(담배, 성냥, 라이터 등), 향정신성 물질(본드, 부탄가스, 환각제 등), 흉기(공구류, 칼, 각종 총류 등), 화기 및 전열기(드라이기, 고데기 등),
 - 나. 학습 분위기를 해치는 오락용 휴대 전자기기(PMP, 게임기, 오락기 등)를 등교 시 소지한 경우
- 7 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 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정당한 교육이나 지시에 대해 불응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 나.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폭행, 모욕 등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경우

(위 특별법 제15조에 의해 바로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됨)

8 단계별 학생지도(냉정초등학교 생활·인권규정 제5장 제36조)

- ① 1단계 : 훈계
- 위 1번~7번 위반 사항에 대해 담임교사가 학생을 훈계하며 기록으로 남긴다.
- ② 2단계: 담임교사-학생 상담(3회)

1단계가 반복될 경우, 담임교사-학생 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소감문 등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③ 3단계: 담임교사-학부모 상담(2회)

2단계를 3회 실시한 후에도 학생 언행의 변화가 없을 경우, 담임교사-학부모 상 담을 실시하며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④ 4단계 : 특별실(상담실)-학생 상담

3단계를 2회 실시한 후에도 학생 언행의 변화가 없을 경우, 특별실(상담실)에서 관리자(교장 또는 교감)나 상담교사가 해당 학생을 상담 및 지도한다.

⑤ 5단계 : 학교-학부모 상담 (가정통신문 발송)

4단계를 실시한 후에도 학생 언행의 변화가 없을 경우, 담임교사, 상담교사, 관리자(교장 또는 교감), 교무부장, 학년부장, 학부모 참석 하에 위반 사항 전달 및 추후 행동의 변화가 없을 때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개최됨을 예고한다.

⑥ 6단계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

5단계를 실시한 후에도 학생 언행의 변화가 없을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통해서 해당 학생을 징계한다.

※ 사안의 경중에 따라 상위 단계의 학생지도 방법을 바로 적용할 수 있음

9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조치 방안

학생의 위반 행동으로 인하여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이 심각하게 피해를 입을 경우 수업 교사의 판단 하에 다음 각 항에 준하여 실시한다.

- ① 1단계 : 수업 없는 동학년교사 또는 상담교사를 통해 학생을 분리 보호 조치한다.
- ② 2단계 : 교감을 통해 학생을 분리 보호 조치한다.
- ③ 3단계 : 위 8번 단계별 학생지도 ③~⑥항에 따라 지도한다.



1. 인권 교육의 필요성

사회 경제적 불평등 증가, 기후 변화, 생물 다양성 손실, 지구의 경계를 넘어서는 자원 남용, 민주주의의 퇴보. 파괴적인 기술 자동화 등 현재 우리는 중복된 위기와 도전과제를 마주하고 있 습니다. 이는 우리의 인권을 제한하고 지구상의 많은 생명에 손상을 입히는 일입니다.

교육은 더 많은 정의와 지속 가능성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학교를 비롯한 모든 교육은 차별과 혐오가 없는 곳이어야 하며 모든 학교구성원은 성별이나 사회적 지위. 차이를 이 유로 소외되어가 배제되지 않아야 합니다.이러한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은 학교구성 원 모두에게 이루어져야 하며 꾸준한 관심을 기울여야 인권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체험형 인권교육 애플리케이션을 소개합니다. 인권교육용 무료 애플리케이션이지만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므로 학부모님들께서 활용하기에 좋습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먼저 인권교육을 체험하신 후 우리 아이들과 순화된 언어와 사건으로 인권 관련 대화를 나누시며 가정에서 인권 감수성 교육을 실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학교에서도 인권교육은 꾸준히 이루어지며 학교와 가정이 함께 할 때 교육 효과는 배가됩니다.

2. 앱으로 하는 체험형 인권교육 세계로 떠나볼까요?



2) 검색창에 [Rights arcade]



를 검색하여 설치합니다.

- 3) 앱이 실행되면 [en] 버튼을 눌러 한국어를 선택합니다.
- 4) 방글라데시, 중국, 태국 중에서 체험하고 싶은 나라를 선택합니다.
- 5) 안내에 따라 설명을 읽고. 각 상황별 질문에 따라 대답을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 각 국가의 인권 실태를 체험합니다.



소중한 내 아이를 살펴봐주세요.

새학년 새친구, 학교생활 적응

- 1.공동체에 적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2.관심을 가지고 친구를 관찰하고, 웃으며 눈을 보고 인사를 합니다.
- 3.친구의 행동이나 가진 물건들을 칭찬해보세 요. 정직하고 구체적인 칭찬이 좋습니다.
- **4.**혼자 하고 싶은 말만 하지는 않는지, 상대가 지루해하지는 않는지 살펴봅니다.
- 5.친근한 장난과 악의가 담긴 장난을 구별합니다. 장난을 걸 때는 자리를 뜨거나, 놀리는 말을 인정해 버려서 상대방이 장난을 재미없게 만듭니다. 울거나 과도하게 반응하면 장난이 심해집니다.
- 6.위협, 괴롭힘에는 단호하게 거부하고, 신체 적 폭력이 있다면 꼭 어른의 도움을 청합니 다.
- 7.화가 날 때는 몸의 신호를 알아차리고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하여 그 자리를 뜨거나, 숫자를 세어보거나, 심호흡을 해봅니다.

부모님의 애정어린 관심이 필요한 때

- 1.조심스러운 기질을 가진 아이는 조급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1:1 상황에서 친할 수 있도 록 친구를 초대해 보세요.
- 같이 어울려 본 적이 있거나 초대를 받았거 나 새로 전학은 아이 등이 좋은 대상입니다.
- 며칠 정도 여유를 두고 초대하고, 주인으로 서의 역할(놀이, 간식)을 미리 준비시킵니다.
- 손님에게 놀이 등 선택권을 주고, 갈등 상황이 생기면 다툼이 커지기 전 조율해 주세요.
- 2. 아이 입장에서는 친구들 잘못을 지적하지 않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공감하지만 단점을 지적하지 않도록 지도합니다.
- 3.화가 날 때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절하는 것을 부모님과 함께 반복적으로 연습해봅니다.
- 4. 현재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장난감이나 화 제에 관심을 가지게하여 대화거리를 만들어줍 니다.
- 5.스포츠정신을 가르치고 결과에 승복하도록 연습합니다. 이때 일부러 져주지는 않습니다.

친구 잘 사귀는 방법

1.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밝은 표정으로 생활합니다.

어색하고 긴장되는 학기 초,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밝은 표정으로 생활하는 것이 친구를 사귀는데 좋습니다.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향이라도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밝은 표정을 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활달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끄러워 할말이 없어도 밝은 표정으로 있는 아이들은 더욱 쉽게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2. 친구 간에도 예의를 갖추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단체생활을 하다 보면 다양한 갈등이 생기고 친한 친구와 사이가 좋아지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이 때 친구 간에 예의를 갖추고 배려하는 습관 이 든 친구들은 이러한 난관에 부딪쳐도 잘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너한테 양보할게.", "네가 먼저 해.", "내가 도와줄게."라는 말을 습관 들여보세요. 친구를 사귀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동학대 및 신고 학부모 연수

1 아동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입니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2 아동학대의 유형별 징후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행위							
신체적 징후	행동적 징후						
•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흔 •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 골절 등 •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 • 담배 불 자국, 뜨거운 물에 잠겨 생긴 화상자국 • 겨드랑이, 팔뚝, 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올 때 공포를 보임 • 공격 또는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 귀가에 대한 두려움						
성인이 아동에게 하는 언어적ㆍ정	서적 위협 감금·억제·기타 가학적인 행위						
신체적 징후	행동적 징후						
성장장애신체발달 저하언어장애원형탈모 등	• 특정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뜯음 • 반사회적, 파괴적 행동장애 • 히스테리, 강박, 공포 등 정신신경성 반응 • 극단행동, 과잉행동, 발달지연, 자살시도						
성인의 성적인 만족을 위해 아동의 신체	에 접촉하는 행위나 아동과의 부적절한 성적 행동						
신체적 징후	행동적 징후						
 건거나 앉는데 어려움 회음부의 통증과 가려움 찢기거나 손실된 처녀막 아동의 질에 있는 정액 질에 생긴 상처나 긁힌 자국 또는 홍진 항문 주변의 멍이나 찰과상 입천장의 손상, 성병감염 및 임신, 인두염질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행동, 해박하고 조숙한 성 지식 • 타인, 동물, 장난감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상호관계 • 수면장애(유뇨증, 유분증) 섭식장애(폭식증, 거식증) • 위축, 환상, 퇴행행동, 혼자 남아 있기를 거부 • 특정 유형의 사람들 또는 성에 대한 두려움 • 방화/동물에게 잔혹함, 비행, 가출, 자기파괴적 행동						
아동의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혀	아여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						
신체적 징후	행동적 징후						
• 성장지연, 발달지체 • 기아, 영양실조, 적절하지 못한 영양섭취 • 냄새나는 의복, 청결하지 못한 외모 • 지속적인 피로, 나른함, 조는 행위	• 음식을 구걸 • 비행 또는 도둑질 • 학교에 일찍 등교하고 집에 늦게 귀가						

3 아동학대 신고 의무 및 아동학대 신고 전화번호

- -112(경찰서),1577-1391 (아동학대 전문기관) : 아동 학대 상담 및 현장 출동 ·조사 등
- -129(보건복지 콜 센터) : 아동 학대 일반 상담
-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할 수 있음
-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 🛛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갖도록 노력하세요.

진심이 담긴 상호작용을 해주시고 혼내고 체벌하기보다는 부모님의 감정을 전달하세요(예-네가 밥을 먹지 않고 계속 tv만 보아서 몸이 튼튼해지지 않을까봐 엄마는 걱정이 된단다. 등).

- © 부모가 화가 났을 때에는 말이나 행동을 하기 전 꼭 10을 세고, 정말 안 되는 것은 단호하게 '안돼!' 라고 말해주세요.
- ◎ 그래도 행동을 멈추지 않으면 꼭 안아주세요.
- ◎ 우리아이의 두뇌발달과 건강한 하루를 위해서 아침밥은 꼭 먹여주세요.

학교폭력예방 학부모 연수

1. 학교폭력 개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 ※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 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 개념에서 제시하는 유형은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함.
 - ▶ 학교폭력의 유형 : 언어폭력, 신체폭력, 위협 및 협박, 괴롭힘, 사이버폭력, 금품갈취,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성폭력, 폭력써클 가입유도, 강제적인 심부름 등을 말함.

2. 부모가 알 수 있는 학교폭력의 징후

피해학생의 징후 가해학생의 징후 ▶몸이 아프다며 학교가기를 싫어하거나 지각이나 조퇴가 잦다. ▶ 새로운 물건을 가지고 있어 물어보면 친구에게 받았다고 한다. ▶ 용돈을 요구하는 횟수가 늘어나거나 말없이 돈을 가져간다. ▶ 갑자기 돈 씀씀이가 커졌다. ▶ 멍자국이 있어 물어보면 그냥 다쳤다며 자세한 이야기를 피한다. ▶ 다른 학생을 종종 때리거나 동물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인다. ▶ 운동화, 휴대폰, 옷 등이 자주 망가지거나 잃어버렸다고 한다. ▶ 이유 없이 화를 내며 비밀이 많고 대화를 잘 하지 않는다. ▶ 친구가 시키는 대로 따르며, 다른 학생들의 눈치를 많이 본다. ▶ 귀가 시간이 늦어지거나 외출이 잦아진다. ▶ 웃음이 없어지고 맥없이 있거나 방에서 나오려 하지 않는다. ▶ 문제 행동에 대해서 핑계가 많고 과도하게 자존심이 강하다. ▶자면서 식은땀을 흘리며 잠꼬대를 한다. ▶ 성미가 급하고 충동적이며 공격적이다. ▶ 이유 없이 성적이 갑자기 떨어진다. ▶작은 칼 등 흉기를 소지하고 다닌다. ▶동생 등 만만한 대상에게 폭력을 쓰거나 공격적으로 변한다. ▶ 등하교 시 책가방을 들어주는 친구나 후배가 있다.

3.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의 역할

- 내 자녀도 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 수시로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자녀의 행동발달 상황 및 교우관계**를 파악합니다.
- 자녀에게 생명의 존귀함, 상호 인권(인격) 존중, 역지사지, 책임 및 준법 의식 등을 인식시킵니다.
- 자녀에게 혹시 폭력 피해를 당하게 되면 자신감을 가지고 **대화로 당당히 맞서되**, 어려울 경우 자리를 피한 후 반드시 **선생님이나 부모님 또는 친구** 등에게 알리도록 지도합니다.
- 상담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학교차원에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임선생님과 협의**하여 공동 지도하도록 합니다.
- 자녀에게 **모범된 행동, 웃는 얼굴, 온정적인 말, 사랑**으로 대화합니다.

4.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의 노력

- 학교폭력 실태조사 실시 및 예방 교육, 성교육 활동 강화
- 학교 안전지킴이 : 학교 교문 옆 경비실에서 학교 출입 외부인 통제
- 행정실 및 교무실 **CCTV 모니터링**
- 상담실과 연계한 **또래상담프로그램** 실시
- 학급 내 자율 자치규약 정하기 및 반별 인성교육 실시
- 각 학급 담임 교사들의 면밀한 관찰, 수시 상담, 가정과 연계 지도

5. 학교폭력 사안처리 흐름도

학교폭력 사안발생 안전조치 보호자 연락 피해·가해학생 상담 •실태조사, 상담 •유형별 초기대응 •보호자 통보 •심의위원회 소집 •학교장 처분, 서면통보 •교육청 보고 •분쟁조정



- 이런 말을 자녀에게 자주 해주세요
- 🦙 <u>최고가 아니어도 괜찮아, 최선을 다하자!</u>
- 별거 아니야. 아빠도 그랬어. 힘내!

지금은 배우는 과정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어.

얼마는 늘 너를 믿는다! 잘 해낼거야!

- <u> 나는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u>
- <u></u> 우리 딸.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단다!

학교폭력은 '학교', '학생'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우리의 책임입니다.

가정폭력예방 학부모 연수

가정폭력의 정의 및 구성원 범위

- □ 가정폭력 :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입니다.
- □ 가정구성원의 범위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 양친자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동거하는 친족

가정폭력의 유형



가정폭력이 발생 했다면

- 1.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때, 먼저 「112」에 신고하세요.
- 2.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면,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피해자 동의 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연계하거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 ➤ 피해자 긴급구호: 여성긴급전화(☎ 1366), 다누리콜(☎ 1577-1366 또는 1577-5432)
 - ➤ 무료 법률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 ➤ 피해치료 지원: 지자체,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보호시설, 상담소, 원스톱지원센터 등

가정폭력 예방방법

□ 화 조절하기

화는 폭력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화를 조절하는 데에 실패할 경우 심각한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화가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화가 나는 감정이 들게 하는 상황들을 떠올려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화를 조절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 스트레스 관리하기

스트레스는 폭력의 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폭력발생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터득하여 스트레스를 다스려야 합니다.

□ 효과적으로 대화하기

우리나라 속담에는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뜻한 말을 통해 서로에게 쌓인 감정들을 풀고 칭찬을 통하여 따뜻한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 칭찬 한마디 하기

칭찬은 관계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부부관계 및 가족관계에 엄청난 힘을 가져옵니다. 매일 칭 찬 한마디를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화목한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살예방 학부모 연수

자녀의 변화에 주의 기울이기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에 따르면 11.5%의 학생은 자살생각을 가지고 있고 2.4%는 자살 시도를 하였습니다. 많은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생각이 시작되었다고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요청 하지만 어른들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조금만 예민하게 살펴보면 자녀의 극단적인 선택은 막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죽고 싶다는 절망적인 생각을 할 때 보이는 언어, 행동, 정서표현의 신호들이 무엇 인지, 가정에서는 어떻게 도울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죽음에 대한 개념이 확립되는 시기는 만 10세 경입니다.

- 만 10세 이전의 자녀가 죽고 싶다는 말을 할 때는 어른들이 생각하는 죽음의 개념이 아니라, 너무 힘들다는 호소일 수 있습니다.
- 죽고 싶다는 자녀의 호소를 무시하거나 야단치지 않습니다.

2 죽음을 생각하는 아이들이 보이는 징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식사와 수면 습관이 변합니다. 식사를 잘 하지 못하거나 잠을 잘 자지 못합니다.
- 2) 짜증이 늘어나고 침울하고 우울하게 보입니다.
- 3) 두통, 복통, 소화불량 등 신체 증상을 호소합니다.
- 4) 일기장이나 SNS에 죽고 싶다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 5) 지각, 등교 거부 등 평상시 해오던 일상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 6) 집에서 대화를 거부하고 무기력하게 누워만 있을 수 있습니다.
- 7) 반항적이고 공격적인 태도와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 8) 스스로 신체에 상처를 입히는 위험한 행동을 보입니다.
- 9) 사후 세계를 동경하거나 자기 비하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 10) 자기 주변을 정리하고 평소 아끼던 소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 11) 방에 혼자 있으려고 하면서 인터넷 검색을 자주 합니다.
- 12) 이상한 물품을 구입하거나 갑자기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장물 자녀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1) 반드시 직접적으로 물어봐야 합니다.

"너 요즘 많이 침울해 보이는데, 혹시...죽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니?"
"너가 죽고 싶다고 써 놓은 메모를 봤어. 엄마는 너무 걱정되는구나."

- 2) 아이가 죽고 싶다고 이야기 한다면 매우 당황스럽겠지만 일단 충분히 들어주시고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 언제부터,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물어보세요.
- 혹시 구체적인 계획을 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했는지를, 죽으려는 행동을 시도한 적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이 자살의 위험을 높이지는 않습니다'

3) 문제의 심각성을 부정하지 않고 아이의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해 주세요.

• '죽겠다'는 자녀의 말이 단순한 투정으로 느껴지더라도 자녀의 입장에서는 그 문제는 삶과 죽음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자녀의 입장에 서서 진지하게 이해하고 고통을 나누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4) 자녀의 긍정적인 측면을 지지해 줍니다.

"너는 이 어려움을 이겨낼 힘이 있어, 도와줄게"
"너 생각보다 엄마는 너에게 관심을 갖고 있고 친구들도 있잖아."

5)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방안을 함께 모색하세요.

"엄마(아빠)가 널 어떻게 도우면 좋을까?"

"그런 일이 있어서 네가 죽고 싶은 생각까지 들었던 거구나.

그 일을 엄마(아빠)가 도와 줄 테니 함께 해결해보자."

"내가 보기엔 네가 많이 힘들어 하는 것 같은데, 함께 병원에 가보지 않을래?"

6) 분위기 쇄신을 위해 자녀의 요구조건을 일부 들어주기도 하고 가족 간의 외식이나 즐거운 활동을 하는 것도 좋은 처방입니다.

7) 신속한 조치를 취합니다.

• 만일 어느 시점에서 자살을 감행하려는 전조나 불안한 기운을 느낀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통합교육 및 장애이해 학부모 연수

1 통합교육이란?

통합교육이란?

통합교육은 특수교육대상학생들에게 최소한의 분리교육을 실시하여 또래 친구들과 필요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방식입니다.

2 통합교육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통합교육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물론 비장애 학생에게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통합교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교육대상학생

- ① 비장애 학생과의 상호작용
 - 다양한 또래와 상호작용하며 의사소통 기술과 사회적응 기술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습니다.
- ②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기반
- ③ 자존감 향상
- ④ 연령에 맞는 폭 넓은 교육
- 또래와 상호작용하고 통합학급에서 생활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분리교육에서는 누리기 힘든 폭 넓은 교육을 통합 교육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2. 비장애 학생

- ① 다양성을 수용하는 태도
 - 현대사회에서는 다양성을 수용하는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통합교육을 통해 인간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서로 다름의 의미를 이해하는 계기가 됩니다.
- ② 타인에 대한 배려와 책임감
 - 통합교육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학생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감을 기를 수 있습니다.
- ③ 장애에 대한 편견 해소
 - 통합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두려움을 버리고, 장애인을 대하는 바른 태도를 배웁니다.
- ④ 인권감수성의 향상
 -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함께 지냄으로써 인권에 대해 몸소 체험하고 느껴 인권감수성 향상의 기회가 됩니다.

3 장애인차별금지법이란?

★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은 사람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구현**을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2008. 4. 11 시행)

★ 차별금지대상

⇒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장애인을 **돕고 있는 사람**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차별이 금지되는 영역>

고용(제10조, 제11조)

사용자는 근로관계에서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비장애인과 등한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설· 장비의 개조와 같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한다.



교육(제13조, 14조)

장애인의 입·전학을 거부하거나 강요할 수 없다. 또한 모든 교육 활동에 있어 장애학생의 참여를 제한 거부할 수 없으며 교육책임자 는 교육활동에 필요한 정당한 편 의를 제공해야한다.



시설물의 접근 및 이용(제18조)

장애인(보조견,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시설물 접근 및 이용을 금지 거부해서는 안되며, 시설물의 접근 및 이동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에 대한 차별금 지 (제20, 제21조)

공공기관 등이 배포하는 정보에 접근함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차별 되어서는 안 됨. 또한 장애인의 장 애 특성에 맟추어 수화나 문자 등 의 정보이용 및 의사소통에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이동 및 교통수단(제19조)

이동 및 교통수단 이용에 있어 애인이나 보조견 및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출입 및 사용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제공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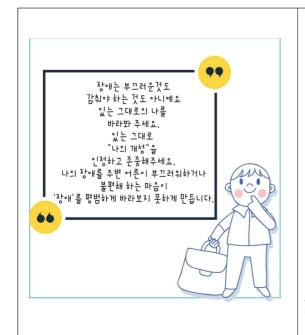
괴롭힘의 금지(제32조)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하거나 학대 및 금전적 착취를 해서는 안 된다.

장애에 대한 이해 4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떤 사 람에게 장애가 있다라고 말하는 때는 우리가 그에게 어떤 지원을 해야하는지를 생각하기 위해서입니다. 장애는 누군가를 판단하 는 대표적인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장애는 그 사람의 많고 많은 특징 중에 하나일 뿐!

피부가 까만사람, 하얀사람, 머리길이가 긴 사람, 짧은 사람, 화사한 옷을 좋아하는 사람, 어두운 옷을 좋아하는 사람 , 다리 가 긴 사람, 짧은 사람, 안경을 쓴 사람, 안 쓴 사람 이런 특징들은 장애가 있건 없건 모두 다양합니다. 다양성에는 인종, 키, 성 별, 나이, 취미, 특기, 취향 등등과 더불어 장애까지도 포함됩니다.



♡우리 자녀에게 알려주세요♡

1. 쉿!! 비밀을 지켜주세요.

배려의 시작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지나친 관심은 부담스러워요. 누군가 소중한 부모님의 자녀를 뚫어지게 보거나 수군댄다면 기분이 어떨지 역지사지의 마음을 이야기 나 눠주세요.

2. 예쁘게 말해요.

친구를 부르고, 지칭하는 말은 친구의 예쁜 이름입니다. 이름으로 친구를 불러주고, 다른 말 은 쓰지 않도록 해주세요. 친구에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인사하고 다가가도록 해주세요. **"♡♡야, 안녕?"**

친구사이에 때리거나 괴롭힙은 절대 안됩니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이 피해자인 학교폭력이 발 생시 학교폭력처분이 1단계 올라갑니다. 나중에 큰일을 해야 하는 냉정인이 학교폭력으로 발목을 잡히면 안 되겠죠.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속담처럼, 우리 아이만이 아닌 우리 학교 모든 학생을 위한 학부모님이 되어주시길 부탁드 립니다.

학부모를 위한 안전교육 연수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예방 수칙』안내

- 1. 어린이의 행동특성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조급성, 모방성, 단순성
 - 가. 항상 뛰려고 한다!
 - 사례1 찻길이 위험하다는 생각에 찻길 건너는 시간을 최소화 하려 합니다.
 - 사례2 등교시간이 늦은 경우 차가 오는지 보지 않고 빨리만 건너려고 합니다.
 - 나. 어른들을 따라하는 모방능력이 뛰어나다!
 - 사례1 어린이가 무단횡단을 할까 말까 망설일 때 옆에 있는 어른이 무단횡단을 하는 것을 보면 이 어린이 역시 무단횡단을 하게 됩니다.
 - 다. 단순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한다!
 - 사례1 내가 지나가면 모든 차가 멈출 것으로 생각합니다.
- 2.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은 어떻게 할까요? 선다, 본다, 든다, 확인한다, 건넌다
 - 가. 길을 건너기 전 우선 멈추기: 주위를 살펴볼 여유가 생깁니다.
 - 나. 횡단보도에서 차를 계속 보기
 - 막연히 잘 보라고 지도하는 것보다는 대상물을 지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 "처음에는 왼쪽의 차를 보고 중앙선을 넘어서는 오른쪽 차를 본다."
 - 다. 손을 들고 건너기
 - 내가 갈 테니 멈추어 주세요라는 표현입니다.
 - 차량 운전시 손을 들고 인사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 라. 차가 완전히 멈추었는지 확인하기
 - 마. 될 수 있으면 여러 사람과 함께 건너기 : 특히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 바. 빗길 보행시 우산으로 시야를 막지 않기
 - 사. 바퀴가 있는 장비 이용시 보호 장비 착용
 - 자전거, 인라인 스케이트, 보드류(스케이드, 퀵) 등은 넘어질 것에 대비하여 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하여 팔이나 다리의 골절을 예방한다.
 - 아. 차가 없는 안전한 곳에서 바퀴달린 기구를 이용하기
 - 자. 학교 통학시 자전거, 퀵보드, 인라인스케이트 이용은 자제

3. 학부모님께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 가. 자녀 동반시 교통안전 실습교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역할모델을 통하여 자녀가 혼자 다닐 때도 안전하게 다니게 됩니다.
- 나. 무단횡단은 자녀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 어린이는 모방성을 갖고 있습니다. 혼자 갈 때도 무단횡단을 하게 됩니다.
- 다. 비가 올 때는 자녀에게 밝은 색의 옷을 입혀줍니다.
 - 운전자가 보행자의 시야를 확보하게 됩니다.
- 라. 자신과 자녀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모범을 보인다.
- 마.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 놀 수 있는 놀이공간에 데려갑니다.
- 바. 날씨가 추울 때 정면을 보면서 가는 것을 알려 줍니다.
 - 날씨가 추우면 일반적으로 몸이 움츠려들고 고개를 숙이며 땅을 쳐다보며 가게 되어 앞에 지나가는 차량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

차량 이용 시 지켜야 할 8가지 안전 수칙



0

차량 탑승 시에는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요!



. .

차량 이동 중에 안전벨트를 풀고 돌아다니지 않아요!



차량 이동 중에 창 밖으로 손, 머리를 내밀지 않아요!



운전에 방해되는 행동들은 하지 않도록 해요!



좌우를 꼼꼼하게 살펴요!



차량에서 내릴 때는 반드시 차량에서 내릴 때는 옷이나



버스를 탈 때는 줄을 서고



시내버스 이용 시 손잡이를 가방이 끼지 않도록 해요! 차례대로 탑승하도록 해요! 꼭 잡고 급정거를 조심해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이렇게 해요!







- ① 차도에서 떨어져 서서 차가 오는 방향을 잘 살피도록 해요!
- ② 차량이 모두 멈췄는지 확인하며 운전자와 눈을 마주치고 길을 건너요!
- ③ 자전거나 킥보드를 타는 경우, 내려서 끌고 건너도록 해요!





학부모를 위한 정보통신윤리교육

■ 개인정보란?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u>다른</u>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 포함)



■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신설 (제24조의 2)

주민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용

<주민번호 예외적 처리 허용 사유>

-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번호 처리를 요구, 허용한 경우
- 2. 정보주제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신체, 생명,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 3. 기타 주민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 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사이버 폭력의 유형 예시

사이버 폭력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근에는 다음과 같은 형태들이 있습니다.

최신 유형	설명
카카오톡 왕따	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왕따 행위를 모바일 공간으로 옮겨와서 자행하는 것
와이파이 셔틀	스마트폰의 테더링 기능을 이용해서 피해학생의 스마트폰을 와이파이 공유기 처럼 사용하는 것으로, 무선데이터 갈취를 통해 금전적 피해를 주는 것
게임 아이템 셔틀	게임을 하기 위해 필요한 아이템을 피해 학생에게 상납받는 행위

■ 사이버 폭력의 예방 방안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님들의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 1. 사이버 폭력에 대해 규칙적으로 대화를 나눈다.
- 2. 바른 언어습관의 사용에 대해 지도하고 모범을 보인다.
- 3. 사이버 폭력 피해 시 학부모님들의 직접 해결보다는 학교에 도움을 요청한다.
- 4. 자녀들의 온라인 활동(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등)에 관심을 가진다.
- 5. 컴퓨터 및 스마트폰에 음란물과 폭력물을 필터링하는 프로그램 혹은 앱을 설치한다.
- 6. 자녀들이 문제가 생길 경우 직접 해결하지 말고 어른과 상의할 것을 강조한다.
- 7. 스마트폰 및 인터넷 사용시간을 정하고 관리를 한다.
- 8. 사건이 발생했을 때의 처벌보다는 그 전의 예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 **사이버폭력 징후** - 사이버 폭력의 징후를 알고 자녀의 상태를 점검해보세요.

혹시 우리 아이가 사이버폭력을 당하고 있지 않을까?

- ① 불안한 기색으로 자주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
- ② 갑자기 용돈을 많이 요구하거나, 스마트폰 이용 요금이 많이 나온다.
- ③ 부모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
- ④ SNS 프로필 사진이나 상태 메시지가 부정적인 내용이다.
- ⑤ 갑자기 SNS 계정을 탈퇴하거나 아이디가 없다.

■ 사이버 폭력 발생 시 대응 방안

만일 자녀가 사이버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 ① 해당 사실을 알았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한다.
- ② "절대 네 잘못이 아니야"라며 아이를 지지해주고, 끝까지 부모가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을 준다.
- ③ 자녀가 당한 피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한다.
- ④ 가해자를 직접 만나 보복하지 않고, 담임 선생님 또는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
- ⑤ 관련 기관과 상담하여 대처요령과 전체적인 처리 과정을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문자 상담/신고 #1388 (청소년 사이버상당센터) 전화 상담/신고 117 (사이버폭력 신고전화) 모바일 앱 상담/신고 117Chat 스마트 안심드림 온라인 상담/신고 www.wee.go.kr (학생위기상담중합서비스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 **인터넷중독이란?** 인터넷을 과다 사용하여 인터넷 사용에 대한 금단과 내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용자의 일상생활 장애가 유발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 인터넷 중독 예방 지침
 - 특별한 목적 없이 컴퓨터를 켜지 않기 컴퓨터 사용시간 가족들과 협의결정
 - 컴퓨터 사용시간과 내용을 사용일지에 기록 알람시계로 사용시간 수시확인
 - 운동이나 취미활동시간을 늘리기 인터넷으로 식사나 취침시간을 어기지 않기
 - 스스로 인터넷 사용조절이 어려울 경우, 시간관리 소프트웨어 설치
- **스마트폰 중독이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울하거나, 초조함, 답답함을 느끼며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병적으로 집착한 상태
- 스마트폰 중독 예방 지침
 - 재미도 있고 도움도 되는 유용한 앱 활용 스마트폰 필요할 때에만 사용
 - 친구들과 눈으로 대화 때와 장소에 따라 적절히 사용
 - 시간제한 앱 깔고 푸시(알림) 기능 끄기 온라인에 글을 남길 때에는 신중하게 작성

■ 스마트폰 사용 습관 확인

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쉼센터 홈페이지 '스마트폰 과의존 유아동척도(관찰자용/성인용)' 활용 http://www.iapc.or.kr

- 인터넷, 게임 이용 관리
 - 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쉼센터 홈페이지 http://www.iapc.or.kr
 - '스마트폰 과의존 유아동척도(관찰자용/성인용)' 활용
 - pc 사용 관리 : 그린 I-net http://www.greeninet.or.kr

다양한 매체를 통해 유통되는 유해정보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올바르게 방송통신 정보를 이용하도록 구축한 '청소년정보이용안전망. 홈페이지에서 설치파일을 다운 받으시거나 포털사이트 '그린아이넷' 검색을 통해 다운 가능

- 스마트폰 유해정보 차단 : 스마트보안관, 아이스마트키퍼 등
 - 청소년이 스마트폰에서 불법 유해정보(앱,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하고, 부모가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정보 및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모바일용 SW.
 - 부모 스마트폰에 설치한 경우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시간 · 앱 · 웹사이트 관리, 자녀 스마트폰 이용 통계 확인이 가능
 - 부모 및 자녀 스마트폰의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 T스토어, 올레마켓, U+스토어 등 오픈마켓에서 다운로드하여 설치 가능

성폭력 예방교육

1. 성교육에 임하는 부모님들이 가져야 할 자세

- (1) 성교육을 위해 부모님들이 먼저 변화해야 합니다.
 - 성에 대하여 엄격하며 금기시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자연스러운 생활의 일부로 인식합니다.
- (2) 자녀들의 성적 성숙을 인정하여 현실감각을 갖고, 개인적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 (3) 부모가 일상생활 속에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 (4) 딸이나 아들 모두 이성(異姓)의 성 발달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 (5) 성교육은 과학적인 면과 사회적인 면, 윤리적인 면을 병행하여 가르쳐야 합니다.
- (6) 질문에 답할 때는 당황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불충분한 대답이라도 좋으나,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합니다.
- (7) 준비하고 있다가 계기를 포착하여 성교육을 합니다.
- (8) 정확한 성지식을 알고 있어야 잘 지도하므로 부모 자신도 올바른 성에 대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 (9) 부모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전문교사나 상담기관을 찾습니다.

2. 성폭력 예방 주의사항(자녀와 함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1) 성폭력을 당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누구든지 당할 수 있다.
- (2) 성폭력을 하는 사람도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평소 친절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 많다.
- (3) 어둡고 인적이 드문 골목길 보다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큰길을 이용해서 다닌다.
- ⇒ 혼자 다니는 경우 범죄의 표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되도록 둘 이상, 친구와 함께 다닙니다.
- (4) 자신 있게 행동해라.
- (5) 의도적으로 친절을 베푸는 경우를 경계하라.
- (6) 타인이 자신의 신체를 만졌을 때, 싫은 느낌이 있는 경우 단호히 싫다고 이야기한다.
- (7) 이성과 술을 마실 때는 분위기에 휩쓸려 통제력을 잃지 않는다.
- (8) 위급한 상활일 경우 집기나 가재도구로 창문을 깨뜨려 외부에 알리는 것이 좋다.

3. 성폭력 예방을 위한 부모님의 역할

- (1) 배우고, 가르치고, 연습해야 합니다.
 - ⇒ 자녀의 성적발달 등 청소년과 관련된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며, 청소년에게서 나타나는 위험 신호 등을 알고 현재 어려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 (2) 건강하고 모범적인 경계를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 ⇒ 부모는 자녀에게 성적으로 건강한 경계를 세우는 것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 (3) 일상생활에서 자유롭게 자기표현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고,"No"가 존중되는 경험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 가족 간의 많은 대화가 자녀들의 안전을 지킵니다.
- (4) 자녀에게 성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접촉과 용납할 수 없는 접촉에 관하여 분명하게 알려 주어야 합니다.
- (5) 부모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전문교사나 상담기관을 찾아갑니다.

4. 성폭력 예방을 위해 자녀들을 이렇게 지도해 주세요

- (1) 자녀에게 성적인 행동을 강요하지 말아라.
- (2) 상대방의 거부를 그대로 받아들여라.
- (3) 침묵을 동의로 생각하지 말아라.
- (4) 성폭력은 범죄행위임을 명심해라.
- (5) 불쾌한 접촉은 장난이라도 하지 말아라.
- (6) 너의 성가치관, 행동에 기준을 가져라.
- (7) 같은 상황에서도 상대방은 너와 다를 수 있음을 알아라.
- (8) 이성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라.
- (9)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부모가 항상 너의 편이며 너를 사랑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라.

5. 성매매 예방을 위한 어른들의 할 일

- (1) 불건전한 접대문화, 향락문화 거부하기, 바꾸기
- (2) 인터넷 성매매 알선 및 구매 관련 카페나 글을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기
- (3) 주변의 유해환경 및 유흥업소 감시 및 신고하기
- (4)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및 신고활동 등 청소년 성매매 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하기
- (5) 성매매 알선 및 권유행위 신고하기 (경찰서 112, 경찰청 홈페이지 www.police.go.kr 접속 후 사이버 범죄 신고)

6. 성폭력 예방을 위해 가정에서는

- (1) 성범죄자 알림e(http://sexoffender.go.kr) 사이트에 접속하여 수시로 집 근처에 사는 성범죄자 현황을 파악하여 어린이에게 조심하도록 알려줍니다.
- (2) 아는 사람이라도 가족이 아닌 경우 단 둘이 집에 같이 있는 것 금지, 모르는 사람의 차를 타지 않도록 자주 알려줍니다.(지속적인 반복교육)
- (3) 평소 자녀와 충분한 대화를 하고 무슨 일이든지 가족에게 말할 수 있도록 합니다.
- (4) 자녀가 무심히 하는 행동이나 말을 잘 살펴봅니다.
- (5) 위험 상황을 알고 피할 수 있도록 상황에 맞는 표현과 대처방법을 알려줍니다.

7. 성폭력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 여성긴급전화: 1366(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긴급 구조·보호·상담)
- 성폭력신고전화: 117
- 경기 서부 해바라기센터 : 안산 단원병원 031-364-8117
- 경기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031-215-1117

여성긴급전화

[참고자료] 여성가족부: www.mogef.go.kr/

감염병 예방

1.

코로나19 예방 안내

1. 등교기준 (현행유지)	구분	나의 상황				
	千正	격리·감시기간	검사	등교(출근) 기준		
	내가 확진자인 경우 격리(7일)		-	격리기간 중 등교중지 ※확진 정보 자가진단 앱에 입력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수동감시(10일)	3일 이내 ' <u>PCR 검사</u> '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①학생 : 등교중지 권고 ②교직원 : 자택대기 권고		
	3 T		음성 시 -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검사 음성 시 등교, 출근		
	유증상자	•	자가검사 및 의료기관 방문 검사	검사 음성 시 등교, 출근 (검사 양성 시 의료기관 추가검사		
	<u>※</u> 학교 <u>실내, 실</u>	의 마스크 자	<u>율적 착용</u> , 일부 상황에서는	는 착용 의무 또는 권고 유지		
	구분		교육부 안내사항(학교적	용)		

2. 마스크 착용기준 (질병관리청 참고)

구분	교육부 안내사항(학교적용)						
<u>착용의무</u>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mark>단체 버스 등</mark> 의 차량 이용 시 탑승자						
착용권고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 '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 인 경우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제하자, 기저질환자 등						
	②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되어 있는 경우 ※ 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포함						
	⑤ 다수가 밀집 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확진자 방역수칙	격리 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기간으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3. 건강상태 자가진단 변경 사항

- ① 등교 전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만 참여
 - 유증상자, 신속항원검사 양성, PCR검사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등교 전 감염위험 요인이 있어 등교중지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 증빙서류 제출)
- ② 확진 시에는 등록 필수
 - 자가 진단 앱 로그인- 오른쪽 초록색 방역기관 통보 내역에 등록



2. 학교에서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

병명	초기 증상	등교 중지 기간		
홍역	귀 뒤에서부터 발진, 발열	발진 후 5일까지		
수두	발열, 발진, 수포	모든 발진이 딱지가 될 때까지		
유행성 이하선염 (볼거리)	발열, 귀밑이 부어오름, 식욕부진	부어오른 귀밑이 가라앉을 때까지(약5일)		
인플루엔자	38도 이상 고열, 관절통, 두통, 호흡기 증상	별도의 해열제 복용없이 열이 나지 않는 상태로 최소 24시간이 경과한 후		
유행성 각결막염	안구 충혈, 안구통, 눈부심, 가려움증	의사가 등교해도 된다는 진단		

※ 학생이 법정 감염병에 걸려 등교중지를 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 가. 감염병이 의심되면 등교하기 전에 담임선생님께 전화 연락 후 병원에 갑니다.
- 나. 병원 진료 후 감염병 진단을 받으면 담임선생님께 전화 후 격리 치료를 합니다.
- 다. 완치되어 등교할 때 병원에서 의사확인서를 받아 담임선생님께 제출합니다.

3. 감염병 전파(확산) 방지

- 가. 학생이 열이 나거나 기침을 많이 하는 상태로 등교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친구들에게 감염병을 전파 시킬 수 있습니다.
- 나. 감염병이 발생하면 충분한 휴식을 취해서 면역력을 높여야 하는데 무리하게 등교하면 치료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다. 해마다 감염병이 유행하고 새로운 종류의 감염병이 발생하여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감염병은 누구나 걸릴 수 있으므로 단체생활에서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여 감염병 발생을 조기에 차단합시다.

4.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 방역 수칙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1. 미세먼지 실시간 농도 확인하기

- 가. 에어코리아 홈페이지(http://www.airkorea.or.kr)
- 나. 스마트폰 앱 "우리동네 대기정보" 다운 설치: 동네. 학교주변 실시간 미세먼지농도확인

2. 우리학교 미세먼지 대응사항 (교육청 실무매뉴얼 근거)

경보단계	대응사항 및 행동요령
주의보 미세먼지 150이상 또는 초미세먼지 75이상 2시간 지속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학교 내 식당 기계, 기구 세척, 음식물 위생관리 강화 공기정화장치 가동
경보 미세먼지 300이상 또는 초미세먼지 150이상 2시간 지속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 체육활동, 현장학습, 체육대회 등을 실내 수업으로 대체 수업시간 조정, 등·하교 시간 조정, 임시휴업 검토 미세먼지 관련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 (조기 귀가, 진료) 학교 내 식당 기계, 기구 세척, 음식물 위생관리 강화 공기정화장치 가동

3. 미세먼지 발생 시 건강수칙

(미세먼지 '나쁨' 이상인 경우, 호흡기·심혈관계·천식 등 민감군은 '보통'에도 준수)

- 실외활동 자제, 실내활동으로 전환
 - 대기오염이 높은 시간, 장소 피하기 (출·퇴근시간, 도로·공장 등)
 - 활동량이 커지면 호흡률이 증가하여 미세먼지 흡입이 증가하므로 외출 시에는 활동량 줄이기
-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기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보건용 마스크 이용하기(KF80, KF94, KF99)
 - 올바른 마스크 사용방법을 숙지하기
 - 호흡기, 심혈관질환, 천식환자는 의사와 상의 후 사용하기











- 외출 후 손, 얼굴 깨끗이 씻기
 - 외출 후 미세먼지가 실내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손발, 얼굴을 깨끗이 씻기
 - 병원균을 제거하여 호흡기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올바른 손 씻기 실천하기
- 창문을 닫아서 실외공기가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 요리를 할 때 초미세먼지가 급증하므로 반드시 환풍기 작동시키기
 - 청소기 대신 물걸레 사용하기
 - 흡연 및 간접흡연 피하기
- 학생 개인마스크 상시 소지 : 나쁨 이상 미세먼지 발생 시 착용

내 자녀 바로 알기(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1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가 학부모 서비스란?

학부모서비스는 열람서비스로써 학교를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학교정보 뿐만 아니라 자녀의 성적, 출결, 학교생활기록부 등 자녀의 학교생활을 인터넷으로 한 눈에 열람할 수 있고 선생님과의 상담, 가정통신 등 학교와 학부모간 상호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학부모의 교육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기본법 제13조에서 보장하는 학부모의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학부모서비스 이용 사이트 : www.neis.go.kr - [학부모서비스] - [경기도교육청]



나 이용방법 및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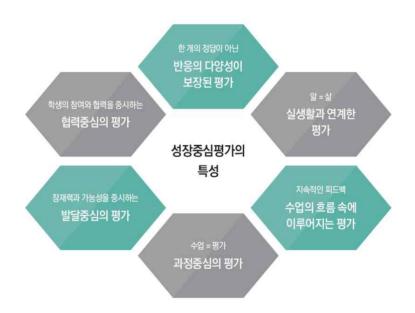


학생성장중심평가의 이해

1

목적

- 1. 아동 개개인의 교육목표 성취도를 측정하여 교수·학습 지도 방법 및 평가 방법 개선에 활용
- 2. 아동 스스로 작품을 만들거나, 행동으로 나타내거나, 답을 작성(구성)하도록 하는 수행평가를 확대 실시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과 창의력, 문제 해결력, 적응력 등 종합적인 고등 정신 능력을 향상시킴
- 3. 아동들의 능력과 적성을 계발하고 바른 생활 태도의 습관화 등 인성 교육을 강화하기 위함



2

평가 방침

- 1. 학습과정 중심의 수행평가를 실시한다.
- 2. 교육평가는 학년 특성에 맞는 영역별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교과학습발달상황, 창의적체험활동상황, 행동발달상황 등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한다.
- 3. 각종 평가 결과는 점수화를 지양하고 행동 특성을 문장기술 식으로 기록한다.
- 4. 학년 협의회를 통하여 수립한 학년 평가 계획을 바탕으로 논술형 평가를 포함한 다양한 수행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수업 중 교사별 상시 평가를 실시한다.
- 5. 2023학년도 평가 계획은 1,2학기 초 학생과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이용하여 안내한다. 학기별(4,9월) 정보공시 후, 학교 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공개한다.

3 평가계획

평가 영역		평가의 종류	시기	횟수	비고		
교과 평가	진단활동 주간	1~6학년 : 신체발달, 감각, 인지영역등	3월	1회	1~6학년		
	기초학력 검사	기초학습 부진학생 판별 및 구제현황 파악 (해당 학생만 실시)	3월, 6월 9월, 12월	4회			
	수행평가	전 교과 - 논술, 구술, 토의토론, 실험·실습,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자기평가, 동료평가, 정의적 능력평가 등	연중	상시	학년(급)별 평가계획		
창의적 체험활동 평가	(자율, 동아	리, 봉사, 진로)활동, 안전한 생활	연중	상시	특기사항 기록, 누가기록		
행동발달 평가	연중 수시를 총체적으로 기술	관찰하여 누가 기록된 행동특성을 바탕으로 학생을 이해할 수 있는 종합의견을 문장으로	연중	상시	담임교사 관찰 평가		

4 평가의 통지

1. 학기말 통지표는 1학기말과 2학기말에 각각 배부한다.

학교도서관 이용 안내

①» 운영방침

- 온·오프라인 도서관 운영을 효율적으로 병행하여 학생참여 운영 확대
- 교육과정 연계 독서교육, 독서프로그램운영 활성화로 책 읽는 학교문화 조성

Ⅲ)» 세부추진 계획

● 학교도서관 이용안내

가 도서관 이용 시간 : 오전 8:40 ~ 4:40

나 도서관 대면대출 운영

내용	이용방법	이용규칙		
대출권수, 기간	3권, 7일간(1회 연장7일)	- 입장 시 마스크 착용, 손 소독 필수 - 도서관 내부 소독철저, 책소독기 사용 - 학생 간 거리두기 유지		
제한사항	열람 제한 동시 입실 인원 20명으로 제한	- 열람 불가 - 단시간 내 대출하여 접촉 최소화		

2 • 학교도서관 자료 현황

0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총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자연과학	기술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
1019	723	310	3189	2931	1011	928	1147	11997	3102

③ • 학교도서관 자료검색



4 · 경기도 독서교육종합시스템 이용 안내

경기도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회원 가입 * 기존 가입한 학생들은 그대로 사용합니다.

